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36
----------	-------

발의연월일 : 2025. 9. 3.

발 의 자 : 손 솔 · 전종덕 · 정혜경
용혜인 · 윤종오 · 한창민
윤준병 · 서왕진 · 최혁진
이주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간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의 잇따른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심야 장시간 노동이 지목되고 있음. 야간 근로시간대의 사망자수가 2022년 60명, 2023년 55명, 2024년 63명이고 2025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산업안전연구원의 2024년 연구 결과에서 야간근로자는 비야간근로자에 비해 육체적 건강위험이 1.2배~2.2배 높고 정신적 건강위험이 1.1배~1.9배 높으며 야간근무, 교대근무, 장시간 근무 중 2가지 이상을 할 경우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사망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 사업장들은 장시간 야간근로, 연속 밤샘근무와 교대근무를 시행하는 곳이었음. 야간근로사업장의 사망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줄이기 위해 야간근로 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 야간노동시간의 제약, 퇴근 이후 출근까지 충분한 휴식 시간의 확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야간근로자를 제외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다만, 통상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급으로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본다.

제56조의 제목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연장 및 휴일 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야간근로)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야간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야간근로의 횟수는 교대 근로자는 월 8회를, 야간에 고정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는 월 14회를 초과할 수 없다.

2. 야간근로는 3일 이상 연속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

3. 야간근로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할 경우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야간에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및 기타 동거하는 자를 말한다)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주간근로 업무로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야간근로자(근로자가 3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월 60시간 이상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기로 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70조제1항 중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를 “여성을 휴일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56조”를 “제56조, 제56조의2제3항·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을 “제52조제

2항제2호, 제56조 또는 제56조의2제3항을”로 한다.

제110조제1호 중 “제55조”를 “제55조, 제56조의2제1항·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①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다만, 통상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급으로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본다.</u>
6. ~ 9. (생 략) ②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u> ①·② (생 략) ③ <u>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u>	<u>제56조(연장 및 휴일 근로) ①·② (현행과 같음)</u> <u><삭 제></u>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신 설>

제56조의2(야간근로)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를 말한다)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야간근로자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1. 야간근로의 횟수는 교대 근
로자는 월 8회를, 야간에 고
정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는
월 14회를 초과할 수 없다.

2. 야간근로는 3일 이상 연속하
여 이루어질 수 없다.

3. 야간근로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 시
간을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
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할 경
우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나 야간에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및 기타 동거하는 자를 말한다)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주간근로 업무로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야간근로자(근로자가 3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월 60시간 이상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기로 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u>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u> 3. <u>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u> 4.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u>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u>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u>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u>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u> 2. <u>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u> 3. <u>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u>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 --<u>여성을 휴일에</u>----- ----- ---. ② ----- ----- ----- ------.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	--

<u>로 청구하는 경우</u> ③ <u>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u>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u>제56조</u>,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u>제52조제2항제2호</u>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u><삭 제></u> 제109조(벌칙) ① ----- ----- ----- -- <u>제56조, 제56조의2제3항 · 제4항</u>----- ----- ----- -----. ② ----- -----<u>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또는 제56조의2제3항을</u>----- ----- ----- -----. 제110조(벌칙) ----- ----- -----
--	---

